

의안번호	제47호
의결 년월일	2026. 4. 22. (제337회)

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금산군수
제출년월일	2026. 4. 10.

#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제47호

제출년월일 : 2026. 4. 10.
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### 1. 개정이유

-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(상·하수도)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4호)
  - (신설) 상·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
- 조례 내 오류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- 기 타
 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2640)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2583)
 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6693)
  - 입법예고(2026. 2. 10. ~ 2026. 3. 3.) : 제출의견 없음

##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상·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 가격업소: 수도요금 월 10,000원 감면. 다만, 수도요금이 월 10,000원

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요금을 감면한다.

② 「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

제25조제2항 중 “및 제10호”를 “, 제10호, 제11호”로 한다.

별표 7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「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	하수도 요금 월 10,000원 (월 10,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요금 감면)
--	--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지정 및 취소) (생략)	제4조(지정 및 취소) ① ~ ④ (현행 제4조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)
제5조(영업자의 준수사항) (생략)	제5조(영업자의 준수사항) ① ~ ③ (현행 제5조부터 제2항까지와 같음)
제7조(지원)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상·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
4. (생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#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 :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

나. 관련 조문 : 안 제7조(지원)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상·하수도 요금 감면

나. 추계 결과(산출기초 등) : 2,160천원(2025년도 기준으로 산출함)

(단위: 천원)

구분	합계	내용	비고
	<b>2,160</b>		
상수도 요금 감면	1,080	착한가격업소(9개소) × 월 10,000원 × 12개월	
하수도 요금 감면	1,080	착한가격업소(9개소) × 월 10,000원 × 12개월	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상·하수도 요금 특별회계 세입 감소분으로 처리

### 3. 작성자

산업환경국 경제과장 곽 병 국(☎ 041-750-3010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10,800
상수도 요금 감면액		△1,080	△1,080	△1,080	△1,080	△1,080	△5,400
하수도 요금 감면액		△1,080	△1,080	△1,080	△1,080	△1,080	△5,400
세 출							
재원 조달	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10,8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지방소멸대응기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2,160	△10,800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## 관 계 법 령

###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